

제조물책임법안

- 재정경제부 입법예고안 -

제 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무과실책임)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조(제조물)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 4조(제조자등)

이 법에서 “제조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을 제조·가공한 자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유입한 자
4. 본건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제 5조(결함)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제 6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7조(면책사유)

① 제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3. 당해 제조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하는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5.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이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6.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제 4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 4조 1호 내지 3호에 규정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을 자기에게 판매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 8조(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 9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 10조(소멸시효)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누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해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 11조(타법과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 등이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ko